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4
----------	-----

2012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 6. 8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2. 6. 27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2. 7. 2)

- 안건상정 및 제안설명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2. 7. 3)

- 계수조정
- 수정안 발의 및 수정안 가결

Ⅱ. 제안설명 요지(기획조정실장 : 이지한)

1. 편성 방향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되어 추경 성립전 우선 확정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전입금에 대한 대응투자와 2012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그리고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과 일부 사업조정 등으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 2012년도 하반기 교원명예퇴직수당 자체 예산 확보,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 등 교육과학기술부 시책사업 추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본예산 편성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수용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긴급한 시설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함.

2.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7.7%인 5,463억 7천3백만원이 증액된
7조 6,626억 6천만원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등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하여

- 하반기 교원 명예퇴직수당과 본예산 미편성 사업,
그리고 교과부 대응투자 사업과 학교 신설,
긴급한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함.

3.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

□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463억 7천 3백만원이 증액된
7조 6,626억 6천만원으로,

- 중앙정부 이전수입 2,572억 6천1백만원,
-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955억 4천8백만원,
- 기타이전수입은 149억 1천1백만원,
- 자체수입은 48억 9천5백만원,
- 기타수입은 전년도이월금으로서
1,737억 5천8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입예산은 순증예산과 목적지정지원금 우선확정분으로 구성됨.

○ 순증예산은

- 2012년도 보통교부금 추가 확정분 423억 7천9백만원,
- 2011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 885억 5천6백만원,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737억 5천8백만원,
- 2012년도 그외수입 등 증액에 따른 48억 9천4백만원으로
총 3,095억 8천 7백만원임.

○ **목적지정 우선확정 분은**

- 국고보조금(초등스포츠강사 지원 등) 21억 4천9백만원,
- 교과부 시책사업 특별교부금(학교폭력근절 프로그램 등) 1,241억 7천 7백만원,
-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친환경무상급식 등) 652억 1천6백만원,
- 기초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복합화사업, 원어민교사 배치 등) 303억 3천2백만원,
- 기타전입금(전국연합학력평가 지원 등) 149억 1천2백만원,
총 2,367억 8천6백만원임.

4.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

□ 세출예산안

- 인건비는 806억 4천2백만원,
- 경상비는 23억 6천만원,
- 교육사업비가 2,577억 6천3백만원,
- 시설사업비가 2,048억 6천9백만원
- 지방교육채 및 BTL상환은 7억 3천9백만원을 포함하여 5,463억 7천3백만원을 증액편성함.

□ 주요사업 편성내역

- **인건비**는
 - 교원명예퇴직수당 753억 6천3백만원,
 -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한 복수담임수당 30억 4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계약제교원 퇴직금으로 5억원,
- 지방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액 등으로 17억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기관운영비**는

- 교육청의 파견교사 여비 등 각 기관 운영비 부족분 3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학교운영비**는

- 개교시기 조정과 학급수 변동 등으로 5억 3천9백만원,
-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미달에 따른 학교운영비 차액 지원 14억 9천8백만원 편성함.

○ **교육사업비**는 총 2,577억 6천3백만원을 편성함.

- 이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 5세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에 101억 9천5백만원,
 - 무상교과서 지원을 위해 99억 4천만원,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93억 5천5백만원,
 - 사립유치원 인건비 증액을 위해 66억 3천2백만원,
 - 주5일수업 실시에 따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64억 6천5백만원,
 - 차세대나이스 운영 지원을 위해 42억 6천4백만원 등 총 468억 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교과부 대응투자 사업총액은 71억 4천 9백만원으로
 - 중학교스포츠강사 지원 25억 9천7백만원,
 - Wee클래스 조성 19억 3천만원,
 - 취업기능강화 특성화고 육성 7억 7천5백만원,
 - 특수교육 장애학생 인턴교사 지원 6억 2천3백만원,
 - 고등학교 저소득층 교과서 지원 5억원,
 - 기초학력부진학생특별지도 인턴교사 채용 3억 4천4백만원,
 - 기타 창의인성 모델학교 및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운영 등 3억 8천만원을 편성함.

- 주요 교육사업 편성액은 총 예산은 265억 6천4백만원으로,
 - 토요방과후학교 운영에 201억 7천4백만원,
 - 학교폭력예방 관련 학생편의시설 설치 지원 총 34억 8천만원,
 - 수련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 리모델링비로 20억원,
 - 교직원단체 지원 9억 9천2백만원,
 - 학교폭력 관련 안전공제회 가입비 16억 6천8백만원,
 - 기타 교육사업비 105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교과부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저소득층학비지원 예산 123억 2천만원을 감액편성함.

-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반납금 27억 8천4백만원은 전년도 서울시 지원사업 예산 집행잔액임.

- 각종 교육사업 우선확정 예산은 1,744억 1천5백만원임.

○ **시설사업비**에 총 2,048억 6천9백만원을 편성함.

- 학교신설(10교) 24억 8천만원,
- 교실증축(3교) 17억 9천5백만원,
- 강당 겸 체육관 건설비(본예산 미반영분) 257억 2천만원,
- 학교급식시설 및 마이스터고 기숙사 신축 등
교과부 대응투자 예산 168억,
- 행정기관시설지원(5교 지원청 LED 및 석면 텍스 교체)
32억 4천만원,
- 직속기관 등 시설보수비(공공도서관 등) 45억 5천2백만원,
- 각급학교 복합화시설, 특별교실, 화장실 증축 등
41억 2천8백만원
- 교육환경개선(화장실 개선 등) 513억 6백만원,
- 학생 동아리실 설치 10억원,
- 급식실 식당 신증축 및 노후시설 개선 254억 5천8백만원,
- 노후 조리계기구 교체 60억 1천만원,
- 이밖에 지역교육현안수요를 포함한 각종 시설비 우선확정액
623억 7백만원을 편성함.

○ **지방채 및 BTL 상황은**

BTL 원금 및 이자에 소요되는 예산

우선확정분을 포함하여 총 7억 3천9백만원 편성함.

Ⅲ. 예산안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1. 세입예산안

가. 총괄

○ 본예산(7조 1,163억원)에서 증액된 세입예산 5,464억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67.3%(3,677억원)
- 목적사업비 잔액 반납 등 자체수입 0.9%(49억원)
- 순세계잉여금 31.8%(1,738억원)으로,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세입재원의 67.3%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도심 공동화 학교나 학교간 통·폐합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용 계획으로 자주 재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발굴과 관리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이전수입** 증액분 3,677억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액은 2,573억원으로,
 - 보통교부금(2011년도 보통교부금 잉여금 정산분 등) 1,309억원
 - 특별교부금(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등) 1,242억원
 - 국고보조금(초등 스포츠강사 지원 등) 21억원임.

- 지방자치 단체 이전수입은 955억원으로,
 - 광역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652억원
 -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원어민교사배치 등) 303억원임.

- 기타 이전수입은(전국연합학력평가지도분담금 등) 149억원임.

- **자체수입**은 (토지매각과 목적사업비 잔액 반납 등) 49억원임.

- **전년도이월금**은 1,738억원으로,
 -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2,236억원)중에서 2012년 본예산 반영분(498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2011년도 추경예산¹⁾과는 달리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이번 추경예산(1,738억원, 77.7%)에 반영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됨.

1)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현황 : 본예산(3,000억원, 96.8%) + 추경예산(100억원, 3.2%)

〈표 3-1〉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본예산액		증감(A-B)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	증감률	구성비
합 계		7,662,660	100.0	7,116,287	100.0	546,373	7.7	1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소 계	4,713,375	61.5	4,456,114	62.6	257,261	5.8	47.1
	보통교부금	4,587,049	59.9	4,456,114	62.6	130,935	2.9	24.0
	특별교부금	124,177	1.6	0	0.0	124,177	100	22.7
	국고보조금	2,149	0.0	0	0.0	2,149	100	0.4
자치단체 이전수입	소 계	2,520,410	32.9	2,424,862	34.1	95,548	3.9	17.5
	법정전입금	2,398,394	31.3	2,398,394	33.7	0	0	0.0
	학교용지 부담금	22,091	0.3	22,091	0.3	0	0	0.0
	비법정 전입금	99,925	1.3	4,377	0.1	95,548	2,064.1	17.5
기타 이전수입	기타 지원금 ²⁾	19,961	0.3	5,050	0.1	14,911	295.3	2.7
자체수입	소 계	185,292	2.4	180,397	2.5	4,895	2.7	0.9
	교수학습 활동수입	160,152	2.1	162,587	2.3	△2,435	△1.5	△0.4
	행정활동수 입	5,408	0.1	5,408	0.1	0	0	0.0
	자산수입	1,914	0.0	1,784	0.1	130	7.3	0.0
	기타수입	17,818	0.2	10,618	0.1	7,200	67.8	1.3
지방교육채	지방교육채	0	0	0	0.0	0	0	0.0
기타수입	전년도 이월금	223,622	2.9	49,864	0.7	173,758	348.5	31.8

2) 기타이전수입(149억원)증액 내역

(단위 : 천원)

내역	지원기관	금액	내역	지원기관	금액
전국연합학력평가 시도분담금	타시도교육청	2,950,377	미디어강사지원	한국언론재단	18,900
학교폭력예방교육 교사연수	부산교육청	4,764	발명교실 운영	특허청	25,600
한중중학교교류	국제국립교육원	134,890	항공소음피해학교 냉난방재설치	한국공항공사	1,119,827
영동중 신설이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건설비	NH공사	10,528,122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한국도서관협회	3,000
게임과 몰입 예방상담	한국콘텐츠진흥원	126,000	합 계		14,911,480

나. 세입 자원별 현황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증액은 5,464억원으로 목적지정지원금(2,368억원)과 순수증액분(3,096억원)으로 구성됨.
-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목적지정지원금은 2,368억원으로 추경재원의 43.3%를 차지하고 있음.
- 순수증액분(3,096억원)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1,737억원,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른 증액분 1,309억원, 자체수입 49억원이 증액된 것임.

〈표 3-2〉 추가경정예산 세입 자원별 내역

(단위 : 백만원)

합 계	목적지정 지원금	순수증액분			
		소계	순세계 잉여금	보통교부금 증액	자체수입
546,373 (100.0%)	236,786 (43.3%)	309,587 (56.7%)	173,758 (31.8%)	130,934 (24.0%)	4,895 (0.9%)

- 목적지정 지원금(2,368억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확정되기 이전에 우선 확정하여 이미 완료되었거나 집행중에 있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목적지정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은 추경예산을 사후 추인하도록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바, 시급을 요하는 추경예산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목적사업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특별위원회에 수시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절차가 준수되어야 할 것임.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 것임.
- 2012년도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부예정액 대비 424억원 증액·확정분과 201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886억원 포함 총 1,309억원이 증액된 것임.

〈표 3-3〉 2012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현황

(단위 : 천원)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증액내역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2012년 확정교부 증액분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4,587,048,244	130,934,334	4,456,113,910	4,456,113,910	42,378,519	88,555,815

- 보통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 세입의 주된 재원임에도 기준 수요액 측정항목을 총34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산정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바, 기준수요산정항목의 통합·축소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³⁾ 개정이 요구되어 진다 할 것임.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 보통교부금은 과거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 차례 지적된 바, 서울시교육청 현실을 반영한 증액교부가 필요함에도 매년 유사한 규모가 교부되어 교육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향후 세입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금이 추가 배정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하여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36억원 중 1,738억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작년도 추경예산 순세계잉여금(100억원)과 비교해볼 때 대폭 증가(1,638억원)하여 이번 추경에 주요재원이 된 것으로 판단됨.

〈표 3-4〉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2012~2008년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추경예산안 증액(순증) (D)	순세계 잉여금 추경예산 반영비율 (C/A)	순세계 잉여금 추경(순증) 비율 (C/D)
	합 계 (A)	본예산 반영액 (B)	추경 반영액 (순증)(C)			
2012년	223,622	49,864	173,758	546,373	77.7	31.8
2011년	310,010	300,000	10,010	386,633	3.2	2.6
2010년	372,501	30,572	341,929	601,332	91.8	56.9
2009년	398,426	31,298	367,128	581,628	92.1	63.1
2008년	232,874	83,368	149,506	774,640	64.2	19.3

○ 자체수입의 경우, 교수학습활동수입⁴⁾은 24억원이 감소되었고,

4) 무상교육에 따른 만5세 공립유치원 입학금 및 수업료 : △2, 453,338천원

자산수입에서 1억원, 기타수입에서 72억원은 각각 증가하여 총 49억원이 증액된 것임.

- 기타수입(72억원)은 2010~2011년도 공·사립학교 학교회계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의 반납액⁵⁾으로, 2010회계 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개선⁶⁾을 하여 각급 학교로 전출되었던 목적사업비 중 발생한 잔액을 교육청에 반납하게 함으로 발생한 수입인 것으로 검토됨.

5) 2011년도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현황

(단위: 천원)

합 계	공립	사립
7,182,543	4,961,696	2,220,847

6) 공·사립학교 2011년도 목적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정보담당관-4691, 예산정보담당관-4692, 2012.03.21)

〈표 3-5〉 2012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측 정 항 목		2012년		비교증감 (A-B)	주요증감 사유
			확정교부액 (A)	예정교부액 (B)		
기 준 재 정 수 요 액	1. 교직원인건비	교원	4,246,107,968	4,231,617,148	14,490,820	복수담임수당 증액
		직원	437,581,037	437,790,676	△209,639	
		소 계	4,683,689,005	4,669,407,824	14,281,181	
	2. 교육과정운영비	가. 학교경비	603,535,905	591,091,866	12,444,039	학교폭력 특교
		나. 학급경비	135,253,759	132,465,022	2,788,737	대응재원 증액
		다. 학생경비	224,659,191	220,027,043	4,632,148	
		라. 교육과정운영비	58,058,050	58,058,050		
		마. 교과교실운영비	14,810,000	20,180,000	△5,370,000	교과교실 소요액 감소
		소 계	1,036,316,905	1,021,821,981	14,494,924	
	3. 교육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110,450,869	110,450,869		
		나. 균형교육비	85,872,469	73,947,491	11,924,978	자사고 사회적배려자 학비지원 등 반영
		다. 그밖의 경비	23,223,220	23,223,220		
		라. 지방선거경비				
		소 계	219,546,558	207,621,580	11,924,978	
	4. 학교시설비	가. 교육환경개선비	192,229,205	178,356,994	13,872,211	
		나. 학교신설이전증설비	45,654,000	69,780,000	△24,126,000	기교부액 정산
		다. 교과교실시설비	27,007,000	40,491,000	△13,484,000	교과교실제 소요액 감소
		소 계	264,890,205	288,627,994	△23,737,789	
	5. 유아교육비	가. 유아교육 보육료지원	245,603,786	246,793,695	△1,189,909	
		나. 유치원교원 인건비 보조	26,097,600	22,992,600	3,105,000	기타수당 단가 인상 (5만원)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27,706,585	26,352,736	1,353,849	운영지원비 등 인상 (5만원)
		라.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11,692,000	9,508,000	2,184,000	지원단가 증액
		소 계	311,099,971	305,647,031	5,452,940	
	6. 방과후학교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9,035,180	9,035,180		
		나. 자유수강원지원	37,815,824	37,815,824		
		다. 초중 돌봄교실 지원	19,789,820	19,789,820		
		소 계	66,640,824	66,640,824		
	7. 재경결합보전	가. 지방교육채상환	20,329,871	20,329,871		
나. 민자사업지급금		33,064,000	33,064,000			
소 계		53,393,871	53,393,871			

(단위 : 천원)

구분	측 정 항 목		2012년		비교증감 (A-B)	주요증감 사유
			확정교부액 (A)	예정교부액 (B)		
	8. 학교기본운영비확대		6,289,428	6,289,428		
	9. 학교학급 통폐합지원		15,320,000	15,320,000		
	10. 학교신설 민관협력 확대		588,000	588,000		
	11.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 지원		27,000,000	27,000,000		
	12. 경상적 경비 절감		2,038,180	1,658,913	379,267	확정자료 재산정결과
	13. 외부로부터의 교육투자 유치		1,271,848	1,271,848		
	14.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		11,912,878		11,912,878	추기반영
	15. 사교육비 절감		19,027,120	19,027,120		
	16.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감소		3,035,744	2,981,921	53,823	확정자료 재산정결과
	17.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 제고		2,306,795	2,281,801	24,994	확정자료 재산정결과
	18. 특성화고등학교 개편 지원		2,000,000	2,000,000		
	인센티브 소계		90,789,993	78,419,031	12,370,962	
합 계 (A)		6,726,367,332	6,691,580,136	34,787,196		
기 준 재 정 수 입 액	1. 지방세 등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세	967,166,431	967,166,431		
		시도세	618,907,295	618,907,295		
		담배소비세	250,047,179	250,047,179		
		소 계	1,836,120,905	1,836,120,905		
	2.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		380,293,998	387,759,321	△7,465,323	인상을 반영 제외
3.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11,460,000	11,586,000	△126,000	학교신설비 변동에 따른 조정	
합 계 (B)		2,227,874,903	2,235,466,226	△7,591,323		
보통교부금 교부액(C=A-B)		4,498,492,429	4,456,113,910	42,378,519		

〈표 3-6〉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 경 예 산 안 (A)		본 예 산 (B)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C=A-B)	증감률 (C/B)
합 계	7,662,660	100.0	7,116,287	100.0	546,373	7.7
이 전 수 입	7,253,746	94.7	6,886,026	96.8	367,720	5.3
중앙정부이전수입	4,713,375	61.5	4,456,114	62.6	257,261	5.8
보통교부금	4,587,049	59.9	4,456,114	62.6	130,935	2.9
특별교부금	124,177	1.6	0	0.0	124,177	순증
국고보조금	2,149	0.0	0	0.0	2,149	순증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20,410	32.9	2,424,862	34.1	95,548	3.9
지방교육세 전입금	1,234,863	16.1	1,234,863	17.4	0	0
담배소비세 전입금	255,708	3.3	255,708	3.6	0	0
시도세 전입금	907,823	11.8	907,823	12.8	0	0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2,091	0.3	22,091	0.3	0	0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69,593	0.9	4,377	0.1	65,216	1,490.0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30,332	0.4	0	0.0	30,332	순증
기타이전수입	19,961	0.3	5,050	0.1	14,911	295.3
기타 지원금	19,961	0.3	5,050	0.1	14,911	295.3
자 체 수 입	185,292	2.4	180,397	2.5	4,895	2.7
교수학습활동수입	160,152	2.1	162,587	2.3	△2,435	△1.5
행정활동수입	5,408	0.1	5,408	0.1	0	0
자산수입	1,784	0.0	1,784	0.0	0	0
기타 잡수입	9,717	0.1	2,517	0.0	7,200	286.1
금융자산회수	130	0.0	0	0	130	순증
이자수입	8,101	0.1	8,101	0	0	0
전년도이월금	223,622	2.9	49,864	0.7	173,758	348.5
순세계잉여금	223,622	2.9	49,864	0.7	173,758	348.5

※ 전체 세입 예산에 대한 비율로 표시

2. 세출 예산

가. 교육공무원급여 증액

-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수당지급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복수담임지정에 따른 담임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665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임.

〈표 3-7〉 교육공무원급여 세부 내역별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계		3,273,865,117	66,535,936	3,207,329,181	3,091,689,594
보수	물 량	교육공무원	복수담임 1,888명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예산액	2,731,784,780	2,076,800	2,729,717,980	2,639,835,123
공무원 법정부담금	물 량	연금부담외 각종 기관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400명)	연금부담외 각종 기관부담금	연금부담외 각종 기관부담금
	예산액	440,457,381	30,000,000	410,457,381	385,746,891
명예퇴직수당	물 량	760명	400명	360명	360명
	예산액	62,539,136	34,459,136	28,080,000	28,080,000
직급보조비	물 량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
	예산액	39,083,820	-	39,083,820	38,027,580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2012. 2.23)을 발표하여 이에 따라 학생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학급이나 생활지도를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새학기부터 담임교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생활지도와 담임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해결을

통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2012학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초등학교(5~6학년)와 고등학교는 자율적, 중학교는 2학년 전체학급에 우선 배치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담임교사(1,888명)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복수담임 수당**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음.

〈표 3-8〉 복수담임 지정 세부현황

(단위 : 교, 명)

급별	세 부 내 용	전체 학교수	복수담임 운영대상 학교수	복수담임 운영 현황	
				운영 학교수	추가 담임수
초	- 자율적으로 복수담임 운영 -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학급(6, 5학년) 대상	552	-	18	91
중	- 학년에 관계없이 학생수가 30명 이상 학급이 있는 학교는 2학년 전체 운영 - 학생수, 교사수를 고려하여 확대 운영	375	352	285	2,415
고	- 자율적으로 복수담임 운영 - 학생수가 38명 이상인 학급을 대상	287	-	18	189

- 그러나, 복수담임제는 두명의 담임교사가 학교실정에 맞게 업무를 분담하고 담임학급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로 부담임제와는 구별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학급 운영의 특성상 담임업무의 영역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해 현실적으로 담임업무를 나누기 어려워 학생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사업효과를 검토한 후에 전면 실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실제로 현재 중학교 총375교 중 285교에서 복수담임교사제를 2012학년도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있는 교사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교사 및 기간제 교사가 학급 담임을 하는 경우도 58.5%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담임교사 역할에 대한 구체적

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연수 등을 통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이 요구되며, 시범사업 운영 후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없이 확대시행은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임.

〈표 3-9〉 중학교 복수담임 지정 현황

구분	합 계	정규교원				비정규교원		
		소계	보직교사	일반교사	비교과교사	소계	기간제교사	강사
인원수	2,415	2,014	1,012	995	7	401	401	0
비율(%)	100.0	83.4	41.9	41.2	0.3	16.6	16.6	0

- 이번 추경안에 담임수당을 편성 요청한 복수담임교사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본예산 편성 이후 시행된 것이나, 2012년도 3월부터 담임수당을 우선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으로 이미 집행중인 예산을 사후의결하는 형태인바,

인건비성 경비를 볼모로 의회의 승인을 강제하는 것은 예산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동 사업예산을 의회승인전에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명예퇴직수당**⁷⁾은 교육공무원법 제36조⁸⁾에 따라 명예퇴직을 할 경우,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잔여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로 인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345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증액 편성한 것임.

7) 명예퇴직수당 : 정년퇴직일시를 당겨 미리 퇴직함으로써 남은 기간 근무를 했을때 급여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 정년까지의 남은 근무연수를 산정하여 수당금액을 산정

8) 제36조(명예퇴직) ① 교육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중 교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그 정년은 제47조에 따른 연령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및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자 대비 확정자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1,013명 신청, 796명 확정) 78.6%,
2011년도(1,345명 신청, 853명 확정) 63.4%로,
신청인원 대비 확정인원 비율은 15.2% 감소하였으며,
2012년도 상반기의 경우에도 919명 신청자 중 452명인 49.2%만이 본인의 희망에 따른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공무원 중 명예퇴직 희망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됨.

〈표 3-10〉 교원명예퇴직 신청 및 확정 현황(2010~2012년도)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반기			하반기 (예 정)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확정 비율	신청	확정	비율	희망조사	
합 계	1,013	796	78.6	1,345	853	63.4	919	452	49.2	528	
초· 중· 고 교 원	초등	501	322	64.3	501	322	64.3	349	175	50.1	187
	중등	492	320	65.0	492	320	65.0	341	171	50.1	210
사 립	중등	352	211	59.9	352	211	59.9	229	106	46.3	131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퇴직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연간 명예퇴직 가능인원수를 사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함.
- 아울러, 이전수입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 재원구조상 명예퇴직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은 세출예산의 경직화를 더욱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동일하게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재원은 중앙정부에서 전액 부담⁹⁾해야 할 것이며,

9) 2008년도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지방교육채55,9억원을 발행하고, 상환금 부담을

향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임.

- 최근 언론보도¹⁰⁾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명예퇴직 자금을 보통교부금 실수요액 항목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입법예고 준비중이라고 하는 바, 동 개정안이 확정 될 경우 내년부터 명예퇴직수당 재원부족난 해소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퇴직수당부담금**¹¹⁾은 공무원 연금법』 제69조 4(퇴직수당부담금) 명예퇴직수당과 달리 퇴직금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임.

- 명예퇴직자 증가로 퇴직수당부담금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이번 예산에 300억원을 증액 반영한 것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음.

10) 매일경제신문, 2012.06.21.

11) 퇴직수당부담금 : 정년퇴직자와 동일하게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으로 기관이 100%를 부담,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에게 선지급하고 기관에서 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음. 퇴직수당부담금은 퇴직금의 개념이므로 근무연수에 비례하여 금액을 산정함.

나.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액

-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9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¹²⁾.

〈표 3-11〉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주요내용

항목	산정기준		인원 (명)	소요액 (천원)	비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9,355,020	
장기근무 가산금	3년 단위 월3만원 ~8만원	2년 단위 5만원 ~13만원	4,494	1,348,200	2012.9월부터 변경지급
영유아 보육수당	신설	월3만원	1,141	196,920	자녀 1인당 : 3만원 지급
교통보조비	신설	월6만원	11,992	4,277,760	
가족수당	신설	월6만원	8,896	2,172,240	
자녀학비 보조수당	신설	분기 533,300원	1,860	1,359,900	수업료 : 365,000원 학교운영지원비 : 85,000원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년이상 근무중인 학교회계직원을 2007년도 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 있고, 2011년도부터 장기근무 가산금 수당을 신설하였음.
- 금번 추경안에는 2012년도 9월부터 지급예정인 장기근무 가산금 인상지원, 영유아보육수당,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신설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94억원을 편성요청 한 것이나,

12)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관 회의를 거쳐 마련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방안」 통보(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과-5191, 2011.11. 4.)

- 각 수당별 소요액 산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소와 도서관 등의 행정기관 근무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4개월(2012. 9월~12월)이나 학교 근무자에 대한 지급기간은 6개월(2012. 9월~2013. 2월)로서 지급기간이 상이한 바,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연도¹³⁾와 학교회계연도¹⁴⁾간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앞으로 산출기초 작성시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동일근무기관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 간에도 인건비 지원 재원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도 차별화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노무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할 것임.

13) 교육비특별회계연도 :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 종료(지방자치법 제6조)

14) 학교회계연도 :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다. 학교폭력예방 관련 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총10개 사업에 147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한 바,

〈표 3-12〉 학교폭력대책 관련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본예산(A)	추경예산(B)	증액(A-B)	재 원	담당부서
합 계		21,979	36,700	14,721		
1	문화예술교육활성화	8,808	9,683	875	서울시 교과부	학교혁신과
2	학교폭력예방교육교사연수	0	5	5	기타지원금	교육과정과
3	독서토론 논술 활성화 지원	387	462	75	교과부	교육과정과
4	밥상머리교육 관련 홍보 및 자료개발	0	184	184	교과부	미래인재 교육과
5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채용	0	584	584	자 체	교원정책과
6	특수교육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프로그램 운영	0	250	250	교과부	책임교육과
7	학생생활지도지원	12,784	17,395	4,611	교과부 자 체	책임교육과
8	학교폭력연극프로그램 운영	0	664	664	교과부 자 체	책임교육과
9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0	5,805	5,805	교과부 자 체	체육건강과
10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0	1,668	1,668	자 체	교육재정과

-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은 본예산(88억 800만원) 대비 8억 7,500만원 증액한 96억 8,300만원을 편성요청하고 있으며¹⁵⁾,

15) 다양한 예술활동을 위해 중학교(25교) 악기 지원(6억 2,500만원), 강동교육청 관내 통합적 예술교육활동 전개(5,000만원),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학교(40교, 2억원) 지원

- **학교폭력예방교육교사 연수**는 이번 추경에 처음 5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국어·도덕교과 시간을 이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연수를 하고자 하는 것임.
- **독서토론 논술 활성화 지원**은 본예산 대비 7,500만원 증액한 4억 6,200만원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토요일업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독서토론팀 75팀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임.
- **밥상머리교육 관련 홍보 및 자료개발**은 이번 추경에 처음 1억 8,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과 관련하여 지하철 홍보 광고 제작 및 학부모교육 자료 개발을 하기 위한 것임.
- **공립학교 학교폭력관련 전문상담교사 임용**은 동 전문상담교사 30명을 임용하기 위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임용시험 관련 예산과 시험출제 분담금 증액분을 반영한 것임.
- **특수교육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프로그램 운영**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중점학교(6교) 등을 운영하기 위해 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생생활지도 사업**은 범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교육 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독서문화 공간 또는 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46억 1,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교폭력연극프로그램 운영**은 단위학교에서 교육연극(TIE)¹⁶⁾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써, 총85교에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3억 6천만원과 자체재원 3억 400만원 등 총 6억 6,4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임,
- **중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은 특별교부금 및 자체재원 58억 500만원으로 중학교 379교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를 통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2. 3.30일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처리시스템’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치료요양비 등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하기 위한 16억 6,8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학교폭력 관련 사업의 경우, 최근 문제되는 학교폭력에 교육청과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긴급히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현장의 폭력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하향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경우 정책실패는 물론 기편성된 예산까지도 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양적 접근보다는 폭력의 원인파악과 차단이라는 보다 직접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단기적인 성과를 확보하고 점진적인 예산증액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는 장기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16) 교육연극(TIE, Theatre in Education)의 개념

- ▣ 교육효과를 위해 연극을 교육현장에 응용·활용하는 활동으로서 전문 교육극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연
- ▣ 훈련받은 교육연극 종사자(actor-teacher, 교사 역할을 하는 배우)가 관객(교육대상)이 프로그램 과정에 창의적, 자발적으로 대처·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극
- ▣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pre-work)', '공연 단계(presentation / participation)', '공연 후 단계(post-work, follow up)'의 세 과정으로 구성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편성요청한 예산을 일시에 전액 승인하기 보다는 일부 편성 후 사업효과를 고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 학교폭력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생 자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고, 학교 전체 면학 분위기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요인인 만큼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번 추경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 상 전폭적인 지원이 이어지는 현 시점을 기해 학교폭력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학교가 없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라. 토요일방과후학교 운영

-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다양한 체육·문화·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20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교육과학기술부의 『주5일 수업제 대비 토요일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시내 919교의 초·중학교(특수학교 포함)에서 6,575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당 연간 360만원의 범위¹⁷⁾에서 운영하고 있음.

〈표 3-13〉 2012학년 토요일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급별	학교현황		토요일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교수	학생수	참여 학교수	학생수	참여율	프로그램수	소요액 (백만원)
합계	973	812,475	923	125,409	15.4%	6,575	20,173
초	589	496,124	557	85,634	17.3%	4,264	12,756
중	380	315,619	362	39,712	12.6%	2,302	7,385
특수	4	732	4	63	8.6%	9	32

※ 교과관련 프로그램은 작성대상에서 제외함.

- 동 사업의 경우, 주5일제 수업이 전면실시되어 올해 3월부터 부득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이미 집행되고 있어 편성요청된 예산을 승인할 수 밖에 없음. 다만, 본예산 편성 후 국가정책 변화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17) 프로그램 지원비(강사료) 산출 내역

- ▶ 1기 90만원 = 30,000원(1시간) × 1일 3시간 × 10주
- ▶ 1개 프로그램 360만원 = 1기 90만원 × 4기

- 주5일수업제 전면자율도입 계획이 2011년 6월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늦장 행정으로 토요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2012년 3월에 발표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혼선을 발생시키고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부담요인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됨.
-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운영비를 수익자부담경비가 아닌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앞으로 매년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재원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임.

마. 무상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지원

-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과서 보급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지원을 위하여 109억원을 예산편성 요청한 것으로,

〈표 3-14〉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예산편성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계		61,752,100	10,940,000	50,812,100	50,114,281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	물 량	-초 543,429명 -중 345,449명	-초 566,220명 -중 345,449명	-초 543,429명 -중 345,449명	-초 566,220명 -중 345,449명
	예산액	60,752,100	9,940,000	50,812,100	50,114,281
고등학교 저소득층교과서	물 량	-기초수급자 : 10,869명 -법정차상위 : 11,228명	-기초수급자 : 10,869명 -법정차상위 : 11,228명	-	-
	예산액	1,000,000	1,000,000	-	-

-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는 연간 총 소요액(549억원) 중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99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 요청하였고,
-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은 2012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이 1:1 대응사업으로 교과서를 지원하고자 10억원을 편성 요청한 것임.

○ 초·중학교 교과용 도서구입비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예산에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교육청이 정한 우선사업 순위로 인하여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고, 동 사업의 예산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에는 필요한 소요예산은 반드시 전액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임.

○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18)에서 지원되는 교과서대금(119,2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법정 차상위¹⁹⁾ 계층 학생은 교과서 대금 총구입비를 지원하는 바,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지원금은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지원금 교부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18)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수급품을 지급할 수 있다.

19) 법정차상위 : 건강보험료 기준 비적용 대상자로서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으로 기 등록되어 있는 아래 가구는 자격확인을 통해 저소득층으로 인정

가구유형	기 준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는 경우
확인처	·상기 4종 모두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학생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지원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독려를 통하여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바. 본예산 삭감사업의 증액 요구

○ **영어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영어공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기주도 온라인 영어학습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 개발비 4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 동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11년도 영어 온라인 시범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²⁰⁾, 응답자의 91.4%가 영어실력 향상에 긍정적인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소득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 운영되었을 때 학생들로 하여금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점, 무료 온라인 제공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등 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며 추경으로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

- 2012년도 본예산 심사시 당초(10억원)보다 4억원이 감액된 6억원으로 감액 조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을 추경으로 증액편성하지 않는다는 예산심사의 기본방향과 배치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 결과를 희석시키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바 사업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온라인 자기주도 영어 학습 프로그램』 '11년 시범운영 성과 및 '12년 확대 적용 추진 계획-추경관련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자료(2012. 6월)

-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학원장등 관계자 연수비**(1,800만원)는 2012년도 본예산 편성시 당초 예산안 2억4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으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800만원을 또다시 증액 편성하여 제출한 바, 학원장등 관계자 연수를 위한 장소 대관료가 추경으로 긴급히 편성해야 할 사안인지 교육청 예산부서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을 감액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어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할 사정이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됨.

- 본예산 심사시 감액된 사업은 정부정책의 변경, 관련법 개정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영어 온라인프로그램운영외 1개 사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예산에서 감액 조정된 사업을 재차 추경으로 편성요청한 소관부서와 예산총괄부서에 엄중 경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사. 폐교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

- 동 사업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의 수용규모를 보강하고, 일선학교의 민간 수련교육 시설에 대한 과다이용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영수련활동지원(폐교를 활용한 수련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20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5〉 야영수련활동지원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계	산출내역			
		부지매입비	건물리모델링	외부시설 및 조경	설계용역
야영수련 활동지원 (폐교를 활용한 수련시설 확충)	2,000	500	1,200	270	30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수련교육시설 이용현황에 따르면 총 709,360명의 대상 인원중 55.0%인 39만여명이 민간수련 시설을 이용한 바 수련활동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16〉 수련교육 시설 이용 현황(2011~2008년도)

(단위 : 명, %)

연 도	학생교육원	야영협력 학교	공공수련시설	민간수련시설	계
2011	224,564	1,534	93,009	390,253	709,360
2010	144,983	1,631	34,643	443,175	624,432
2009	130,097	1,417	34,880	384,231	550,625
2008	156,937	1,924	49,717	574,896	783,474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011년도 예산심사시 대상지 미선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당초 편성요청한 소요예산(18억원) 전액을 감액한 사례가 있는 바,
 -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한 소요예산 전액이 반영된다고 하여도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기본사업계획인 “테마형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폐교 매입·활용 추진 계획²¹⁾” 이외에 부지선정, 소유기관과의 매입협의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그 어떠한 선행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금번 추경에 소요예산만 편성요청한 것임.
 - 추경예산은 사업의 긴급성과 회계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소요예산을 요청한 사례인바 편성요청한 예산 전액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그 어떠한 선결절차도 수행하지 않고 소요예산을 편성요청한 소관 부서와 예산부서에 엄중 경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1)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과-5028(2011. 4.15)호

아. 자율형사립고 학교운영비 지원

- 동 사업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11.12.30)에 따라 자율형사립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14억 9,8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재정지원근거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에 명시됨에 따라²²⁾,
- 서울시교육청 산하 32개 자율형 사립고교중 사회적 배려자 충원율이 미달되는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1:1 대응 투자로 재정결손액을 지원하는 것임.
- 그러나 사회적 배려자 충원 미달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금은 2012년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50%와 교육청 자체재원 50% 대응투자로 이루어지나, 2013년도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양될 예정에 있어 향후 300억원에 달하는 결손액을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2011.12.30 개정)

- 당초 중앙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이양시킴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은 압박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에 소재한 자율형 사립학교가 가장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자체재원으로 결손액을 부담시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의 불합리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적 배려자 미충원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립학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각 해당학교에서 소극적으로 유치하여도 재정지원이 되는 점을 악용할 우려도 예상되므로 사회적 배려자 선발의무화 취지에 맞도록 해당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고자 노력하는지 철저히 지도해야 할 것임.

〈표 3-17〉 2012년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배려자 재정결손 현황(시·도교육청별)

(단위 : 천원)

교육청별	대상 학교수	정원 (비율)	총원 (비율)	미총원 (비율)	지원액		
					합계	교과부	자체재원
합계	55	8,754 (100.0)	6,957 (79.4)	1,799 (20.6)	4,330,661	2,181,651	2,149,010
서울	32	5,653 (100.0)	4,480 (79.2)	1,173 (20.8)	2,995,913	1,497,956	1,497,957
부산	5	535 (100.0)	410 (76.6)	125 (23.4)	293,245	146,622	146,623
대구	4	686 (100.0)	549 (80.0)	139 (20.3)	336,627	168,313	168,314
인천	2	168 (100.0)	114 (67.9)	54 (32.1)	126,637	63,318	63,319
광주	2	280 (100.0)	198 (70.7)	82 (29.3)	190,005	95,002	95,003
대전	1	119 (100.0)	116 (97.5)	3 (2.5)	11,340	5,670	5,670
경기	4	688 (100.0)	616 (89.5)	72 (10.5)	116,402	58,201	58,201
강원	1	37 (100.0)	35 (94.6)	2 (5.4)	1,474	737	737
충남	1	249 (100.0)	115 (46.2)	134 (53.8)	231,717	132,182	99,535
전북	1	112 (100.0)	111 (99.1)	1 (0.9)	3,434	1,717	1,717
경북	1	168 (100.0)	160 (95.2)	8 (4.8)	20,229	10,114	10,115
경남	1	59 (100.0)	53 (89.8)	6 (10.2)	3,638	1,819	1,819

※정원, 총원, 미총원 대상학년 : 1,2,3학년 전학년

* 충남교육청 특별교부금(132,182천원)에는 '11년 북일고 미교부액 32,648천원 포함

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 동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공·사립 유치원간의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74억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것임.

〈표 3-18〉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대상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계	35,807,290	7,361,890	28,445,400	24,608,340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지원	물 량	5,200명	500명	4,700명	4,300명
	예산액	28,199,290	6,263,290	21,936,000	21,394,740
수업료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물 량	1,831학급	-	1,831학급	1,831학급
	예산액	5,493,000	1,098,600	4,394,400	1,098,600
사립유치원 교채교구비 지원	물 량	700개 원	-	700개 원	705개 원
	예산액	2,115,000	0	2,115,000	2,115,000

-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에 정액급식비를 월 5만원 씩 지급되도록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증액에 따른 집행계획”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정액급식비를 월 5만원 추가지급분 및 종일반 편성에 따른 인원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63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

〈표 3-19〉 사립유치원 인건비 1인당 월지원액

(단위 :원)

연도별	합계	교직수당	담임수당	정액급식비	비고
2012년도	460,000	250,000	110,000	100,000	서울시 지원금 29억원 포함
2011년도	410,000	250,000	110,000	50,000	
증감액	50,000	-	-	50,000	

- 동 사업의 경우,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필요가 있어 정액급식비를 추가로 편성요청한 필요성은 이해되나,
- 동 사업과 같이 본예산 확정 후 교과부의 계획이 시달되어 교육청의 자체재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교과부에 해당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임.

〈표 3-20〉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대상

구분	지원인원수				
	합계	원장	원감	담임교사	
				일반학급	종일제 학급 ²³⁾
기 준 인원수		유치원당 1명	유치원당 1명	인가학급 내 학급당 교사 1명	학급당 교사 1명
2012학년도 (4월 현재)	5,073	660	257	3,046	1,110
2011학년도 (12월)	4,710	656	267	2,923	864
증감	363	4	10	123	246

- **수업료 동결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아 학비 부담경감’을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수업료 동결을 추진한 사립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학급당 월 20만원 책정 하였으나, 기준액이 학급당 월5만원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1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23) 종일제학급 지원기준 : 편성 원아수 20명, 20명 미만 학급 발생시 1학급은 추가 지원 가능

〈표 3-21〉 수업료 동결 유치원 운영비 지원액

전체 유치원		수업료 동결 유치원			월 기준액		
유치원수 (A)	학급수	유치원수 (B)	학급수	참여율 (B/A)	당초	변경	증액
690원	3,275학급	318원	1,338학급	46.1%	20만원	25만원	5만원

- 전체 사립유치원 690개원 중 수업료 동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의 46.1%, 318개원으로 2011년도 수업료 동결 참여율²⁴⁾ (56.2%)과 비교할 때 10.1%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동 사업을 통하여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동결이 독려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학부모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물가를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나 사업의 계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전시행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24) 2011학년도 수업료 동결 사립유치원현황

전체 유치원		수업료 동결 유치원		
유치원수 (A)	학급수	유치원수 (B)	학급수	참여율
699원	3,229학급	393원	1,831학급	56.2%

차. 교육시설사업비 과다 편성

- 이번 추경예산안 중 교육시설사업비의 경우,
 - **학교기타시설증축** 사업은 본예산(1,039억원)대비 62.3%인 647억원을 증액요청한 것이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본예산(1,810억원)대비 36.3%인 657억원을 증액요청한 바,
 - 이는 최근 3년간 본예산대비 추경요청액만을 비교할 경우,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된 1,304억원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미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p.64)에서 제기된 것과 같이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총 301건의 사고이월중 48.2%인 145건이 추경 편성으로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145건 중 26건은 추경편성후 단 1원의 예산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사고이월 시킨 문제를 지적하였음.
 - 따라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여도 추경편성 이후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에 **학교기타시설증축** 647억원, **교육환경개선** 657억원을 추가로 편성요청한 것은 시설사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표 3-22〉 추가경정예산 교육시설사업 예산편성 내역(2012~201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회계연도	추경예산	본예산액(A)	추경증가액(B)	증가율(B/A)
학교기타 시설증축	2012	168,642	103,923	64,719	62.3
	2011	160,568	126,798	33,770	26.6
	2010	194,128	172,069	22,059	12.8
교육환경 개선	2012	246,699	181,014	65,685	36.3
	2011	180,533	147,007	33,526	22.8
	2010	268,695	257,084	11,611	4.5

* 2010~2011회계연도는 제1회 추경증가액임.

(1) 학교기타시설증축

- 동 사업은 총 647억원을 증액 편성요청한 것으로 실내 체육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 476억원과 서울로봇고등학교의 마이스터고 지정에 따른 기숙사 증축비 48억원을 포함하여 특별교실 등 기타시설 증축을 위한 171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요청한 것임.

〈표 3-23〉 학교기타시설증축 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주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계	168,642,831	64,719,377	103,293,454	156,503,227		
강당 겸 체육관	물량	104건	53건	51건	146건	교육시설과
	예산액	127,821,459	47,587,593	80,233,866	123,406,083	
기타증축	물량	38건	19건	19건	31건	
	예산액	40,821,372	17,131,784	23,689,588	33,097,144	

○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사업의 경우,**²⁵⁾ '08년도에 체육관 증축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 서울시내 총 1,277개 초·중·고교 중 79%인 1,018개교가 현재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도까지 전체 학교의 91%에 해당하는 1,164개교에 강당 겸 체육관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총 51개교에 대한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예산 476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임²⁶⁾.

- 동 사업중 초등 25개교와 중등 15개교의 체육관 증축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하지 못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시설비 252억원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사료됨.

○ **예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3억원이 교부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나,

25) 강당 겸 체육관 보유 및 향후 추진계획

(2012년 5월 기준)

구분	학교수	보유				향후 계획				예정보유		미보유 학교수
		5개년 사업	기타 사업	계	보유율	'13 (5개년)	'14 (5개년)	'15 (중기)	계	학교수	보유율	
공립	928	171	570	741	80%	52	49	34	135	876	94%	52
사립	349	9	253	262	75%	4	3	19	26	288	83%	61
계	1,277	180	823	1,003	79%	56	52	53	161	1,164	91%	113

- 미보유학교는 부지협소, 학교이전, 재개발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학교임

26) 강당겸 체육관 증축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 신규반영 현황 :당산중 7천만원, 공진중 7천만원, 연신중 (복합화) 20억원, 도곡초(복합화) 40억원, 대왕초 (복합화) 20억원 신구초 (복합화) 60억원, 신반포중(복합화) 13억원, 남부초(복합화) 2억7천만원, 당곡중(복합화) 26억원, 경동고(복합화) 36억 7천만원

- 동 사업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 검토보고에서도 제기된 것과 같이 '10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으로 증축을 추진하던 중 문화재발굴(중명전 경계지역)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기 교부된 특별교부금 전액이 2011년도로 이월된 바 있고, 동 이월액도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13억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바,

- 금번 추경재원으로 교부된 13억원의 경우에도 과거 사업 추진이 중단된 사례를 고려하여 사업이 또다시 지연되어 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임.

○ **홍릉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비**의 경우, 해당 학교의 건물이 노후되어 향후 재건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기존 사업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기 편성된 1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회계연도 중 감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 편성 후 불과 수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 감추경을 요청하고 있어 당초예산이 대단히 비계획적으로 편성요청된 것임을 나타내는 실증적인 사례라 사료되는 바 예산편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 **서울로봇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위하여 총48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함.

- 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로봇고등학교가 제5차 마이스터고²⁷⁾로 선정됨에 따라 2013. 3월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²⁸⁾할 예정으로 마이스터고 표준요건 중 하나인 기숙사를 증축하고자 한 것으로,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 20억원, 자체 자원 28억원을 각각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마이스터고로 지정·운영되기 위하여는 표준요건을 갖추어 운영이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대다수의 시설공사가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2013년 3월 개교전까지 당초계획한 일정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7)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28) 서울로봇고 마이스터고 신청 현황

- 신청 분야 : 로봇
- 개교 예정일 : 2013. 3월
- 신청 학과 : 첨단로봇과

학 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수	8학급	8학급	8학급	24학급
정 원	160명	160명	160명	480명

- 신입생 모집 : 2013년부터 매년 1개 학년(160명)씩 모집
- 교육과정 : 1~2학년 로봇관련 공통 교육과정 운영 , 3학년 산업수요 맞춤형 코스제 운영

(2) 교육환경개선사업비

- 동 사업은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 **노후교실개축**(51억 7,300만원)은 대왕초 및 이문초의 개축학교 계속공사비 44억 7,600만원과 거여초 및 청량중의 신규 노후 교실 개축설계비 6억 9,700만원을 편성요청한 것이고,
 - **노후시설개선**(605억 1,200만원)은 화장실개선 52억 500만원, 전기시설개선 60억 1,500만원, 창호교체 19억 5,000만원 등을 편성요청한 것으로 서울시 소재 1,277개 초·중·고교의 규모를 고려할 때 노후교실 및 시설에 대한 개선공사는 지속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후시설개선** 사업중 화장실개선사업비의 경우, 본예산 편성액(95억원)과 유사한 규모인 8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요청하고 있어 추경예산이 긴급현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과제라 할 수 있는 노후시설개선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해야만 하는지 재고해볼 필요는 있음.

〈표 3-24〉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편성(자체재원)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내역	추경예산 (A)	본예산 (B)	증감액 (A-B)	증감률
합 계		236,553,937	176,814,020	59,739,917	33.8
1	노후교실개축	26,827,041	21,653,342	5,173,699	23.9
2	냉난방개선	10,178,370	9,412,250	766,120	8.1
3	창호교체	13,831,900	11,881,900	1,950,000	16.4
4	바닥보수	13,188,000	12,560,000	628,000	5.0
5	화장실개선	18,119,619	9,532,290	8,587,329	90.1
6	외벽보수	25,631,000	20,741,000	4,890,000	23.6
7	방수공사	14,679,560	8,885,000	5,794,560	65.2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내역	추경예산 (A)	본예산 (B)	증감액 (A-B)	증감률
8	전기시설개선	15,172,887	9,157,587	6,015,300	65.7
9	소방시설개선	2,923,960	2,633,960	290,000	11.0
10	외부환경개선	16,960,406	15,788,306	1,172,100	7.4
11	도장공사	1,933,500	1,933,500	0	0.0
12	장애인편의시설	21,137,491	12,105,000	9,032,491	74.6
13	기타사업	55,970,203	40,529,885	15,440,318	38.1

- 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의 경우, 90억 3,200만원 편성요청한 바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에도 의무시설 설치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에도 내진설계비 등은 편성요청하지 않고 있는 바 일본·중국 등 인접국가의 경우, 지진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훈련과 내진시설을 보강하고 있고, 2012년도 본예산에 심사시에도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²⁹⁾에 비내진 건물이 74% 이르고 있어 교육시설도 기상 이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비롯한 내진시설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 금번 추경예산에 장기계속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내진설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대형재난사고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간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하여서 내진설계 비용을 증액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9)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서(2011.12. 7,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 76P

- **그린스쿨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20억원씩 1:1 대응투자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감 학교로 개선하고자 현재 난곡중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중인 사업인바,
 -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동일 목적의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난곡중 학교에서 진행되는 동 사업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사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선행학습사례로써 검토해야 할 것임.

- **사립학교 안전진단 점검 용역**(11억 5,000만원)은 사립학교 시설물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노후교사 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통하여 공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밀점검 등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의 지정이후 현재의 건축물 상태를 파악하여 등급조정 또는 긴급보강 등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표 3-25〉 사립학교 건축물 현황

설립별	전체		1970이전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이후	
	동수	연면적	동수	연면적(천㎡)	동수	연면적(천㎡)	동수	연면적(천㎡)	동수	연면적(천㎡)	동수	연면적(천㎡)
사립	1,248	3,587	234	565	233	727	302	1,041	198	565	281	689
비율(%)			18.75	15.75	18.66	20.26	24.19	29.02	15.86	15.75	22.51	19.20

- 관내 사립학교 전체건물(1,248동)중 37.4%가 1980년 이전 건물(467개동)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은 11교 17동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³⁰⁾ 판정으로 개축 또는 철거대상이 되는 건물이지만, 개축을 하고자 하여도 개축비용의 일정부분을

30) 안전진단 등급별 구분기준

학교법인에서 부담(총 투자액의 30%이상 부담능력)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법인에서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립학교 개축은 중단된 실정이라 할 것이며,

〈표 3-26〉 사립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교육청	학교명	건물명	건축년도	연면적 (㎡)	안전진단	심의결과	비고
합 계	11교	17동		60,002			
동부	경희고	본관	1960	11,636	D	보수보강	
서부	총암중	본관동	1965	3,329	D	개축	
		별관동	1972	2,918	D		
서부	총암고	별관동	1974	2,737	D	개축	
		실습장	1972	816	D		
		본관동	1967	6,480	D		
서부	인창중	본관동(일부)	1959	2,800	D	철거	'14이후 학급수감축후
중부	대신중	신관	1964	2,366	D	개축	
	오산중	본관	1956	3,121	D	개축	
중부	대경정산고	별관(고)	1961	1,199	D	개축	
		본관(고)	1961	5,448	D		
	배문고	가동	1956	4,201	D	개축	
	풍문여고	강당	1949	692	D	개축	
		본관	1940	2,699	D		
		과학관	1966	3,085	D		
성북	고명정산고	별관	1964	3,554	D	개축	
성북	고명중	본관동	1955	2,921	D	개축	

등급	평가내용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건축구조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및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개축대상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투자를 중단하고 있어, 학교 시설물의 노후에 안전의 위험까지 안고 있어 열악한 학교환경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것임.
 -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축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재정결함을 보조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노후시설 개축비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 산정시 교육환경개선비(학교 시설비) 산정기준³¹⁾에 현재 공립학교만을 기준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를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사립학교 개축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³²⁾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최근 3개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이월률과 불용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3-27〉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2009~2011회계연도)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이월률 (C/A)	불용액 (D)	불용률 (D/A)
2011	233,156	168,875	72.4	33,487	14.4	30,794	13.2
2010	395,352	312,292	79.0	49,166	12.4	33,895	8.6
2009	554,340	501,232	90.4	23,727	4.3	29,381	5.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 일정기준이상의 공립학교 교사연면적으로 교육환경개선비 산정

3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및 수용업무 담당관 연찬회의시 건의한 바 있음(2012. 2월)

카. 기타 주요편성 사업 현황

- **지방공무원급여**(17억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개정·공포(2012.01.06)로 유사경력호봉 재확정에 따른 보수부족액(7억원), 에듀파인 인건비시스템과 연금관리공단시스템간의 연금부담금 산출방식 불일치로 인한 부족분 1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보안운영**(10억원)은 개인정보 보호법³³⁾(2011.9.30) 개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훼손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전기관의 업무용 컴퓨터(약10만대)에 대한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편성한 것임.
- 중·고등학교 내 학생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학생편의시설설치비**(35억원)를 편성하여 중·고 696개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 **만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통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보육선진화를 위하여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예산(1,603억원) 대비 102억원을 이번에 증액 편성한 것임.

33)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3-28〉 5세누리과정 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2년도			2011년도 최종예산액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증감	본예산	
계		170,476,050	10,194,900	160,281,150	-
만5세아 유아학비	물 량	35,828명	2,593명	33,235명	-
	예산액	89,551,650	6,223,200	83,328,450	-
만5세아 어린이집	물 량	29,972명	1,471명	28,501명	-
	예산액	80,924,400	3,971,700	76,952,700	-

- **친환경무상급식**(405억원)은 주5일수업제 실시에 따른 급식 일수 증가에 따른 공립초등학교 증액분과 중학교 1학년 증액분을 포함한 400억원과 공립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 5억원을 반영한 것임.
- **학교신설**(130억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와 과대·과밀학급 완화 등을 통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편성한 것임.

〈표 3-29〉 학교신설 현황

(단위 : 천원)

급별	학교수	합계	토지 매입비	시설비	세부내역
합계	10교	13,008,005	8,243,977	4,764,028	
유	3교	214,820	14,820	200,000	토지매입 : 천왕유 시설비 : 강신초병설유 개원초병설유
초	2교	1,773,580	858,580	915,000	토지매입 : 연은초, 장이초 시설비 : 장이초
중	4교	10,939,605	7,290,577	3,649,028	토지매입 : 장현중(증), 영동중(증, 외부), 구의중(감) 시설비 : 천왕중, 장현중, 영동중(외부)
고	1교	80,000	80,000	-	토지매입 : 가재울고

○ **교실증축**(18억원)사업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상지초³⁴⁾(6실)와 수명초(5실)의 교실 증축비(17억)와 수서중 내부 비품비(6천 5백만원)가 반영된 것임.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창의적 체험활동³⁵⁾ 교육과정 평가』를 위하여 나이스(NEIS)에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구축(에듀팟³⁶⁾)**」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증설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012년 7월부터 6개월간

34) 상지초 및 수명초 학급편성 현황(2012. 3월)

학교명	학 급 당 기준인원	공립학교 학 급 당 평균인원	학생수	학급수	급당인원
상지초	28명	26.4명	940	31 (2)	32.4
수명초			1,532	44 (1)	35.6

※특수학급수는 학급수에 반영하고 ()에 별도표기, 급당인원산정시는 제외함.

3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자기 평가,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평가한다.
- 학생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정도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학교가 제공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특성을 상세히 기록하여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2009 개정 교육과정(교과부 고시 제2009 - 41호)>

36) 에듀팟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교 내·외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4가지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의 활동 내용과 자기소개서, 방과후학교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과 외 활동에 학생이 성실히 참여한 과정과 결과를 담는 그릇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시스템(<http://www.edupot.go.kr>)

한국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일괄 발주 추진 예정인 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 분담금 (42억 6,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임.

- 201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에듀팟-나이스통합연계구축(4억 2천만원)은 동 사업으로 통합 추진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함.

〈표 3-30〉 나이스 연계 에듀팍 구축 소요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	통합서버(CPU)		스토리지		백업증설		PDF 서버, S/W금액	시스템 S/W 금액	추정 소요 예산
	Core	금액	용량 (TB)	금액	드라이버 (개)	금액			
합계	458	3,944	1,852	11,177	69	802	1,585	11,787	29,295
총괄센터	60	260	24	278	3	31	89	1,196	1,854
서울특별시교육청	72	484	321	1,657	9	104	125	1,894	4,264
부산광역시교육청	30	148	117	736	4	52	89	760	1,785
대구광역시교육청	20	122	97	606	4	52	89	561	1,430
인천광역시교육청	20	122	103	627	4	52	89	536	1,426
광주광역시교육청	14	37	64	433	3	31	89	338	928
대전광역시교육청	14	37	61	423	3	31	89	338	918
울산광역시교육청	8	21	47	380	3	31	89	250	771
경기도교육청	106	2,136	451	2,181	10	132	125	2,966	7,540
강원도교육청	10	26	55	402	3	31	89	329	877
충청북도교육청	10	26	58	412	3	31	89	279	837
충청남도교육청	14	106	74	504	3	33	89	333	1,065
전라북도교육청	14	37	71	493	3	33	89	333	985
전라남도교육청	14	106	69	483	3	33	89	333	1,044
경상북도교육청	20	122	91	585	4	40	89	506	1,342
경상남도교육청	30	148	125	699	4	54	89	760	1,7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6	24	278	3	31	89	75	479

IV. 심사결과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위원회 예산안 심사·조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2. 7. 2)

- 일시 : 2012. 7. 2.(화) 10:50 ~ 19:00
- 장소 : 대회의실
- 내용
 - 안건상정 및 제안설명
 -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2. 7. 3)

- 일시 : 2012. 7. 3.(화) 11:00 ~ 11:30
- 장소 : 대회의실
 - 계수조정
 - 수정안 발의 및 수정안 가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의결

- 일시 : 2012. 7. 3(제4차 예결특위 회의중 : 11:20~11:30)
- 발의자 : 전종민 부위원장
- 수정내용 : 별첨
- 의결결과 : 수정안 가결

◇ 첨부 :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끝.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794
----------	-----------

2012년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정 이유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다편성되거나 당해 연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과 중복 반영된 사업을 감액·조정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2. 수정 주요 내용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첨 심사·의결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한다.

별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1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 총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예결위 심사의결액	증감액	비고
세 입	7,662,660,272	7,662,660,272	0	
세 출	7,662,660,272	7,662,660,272	0	

□ 세출감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감액	비 고
합 계	3,615,656,036	3,594,666,136	△20,989,900	
5세누리과정지원	170,476,050	160,281,150	△10,194,900	5세유아 학비지원
교육공무원 급여	3,273,865,117	3,263,865,117	△10,000,000	공무원 법정부담금
학교기타시설증축	168,642,831	168,047,831	△595,000	서정초 화장실 증축
야영수련활동지원	2,672,038	2,472,038	△200,000	폐교 수련시설 확충 리모델링

□ 세출증액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심사·의결액	증액	비 고
합 계	272,581,868	293,571,768	20,989,900	
교육환경개선	246,699,868	251,699,868	5,000,000	교육환경개선
예비비 및 기타	25,882,000	41,871,900	15,989,900	예비비 및 기타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구분	예산액	변경 전	변경 후
합 계			1,390,965		
1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내역 통합	951,229	수서중 수서관리모델링 751,229천원 수서중 교실재배치 200,000천원	수서중 수서관리모델링 및 기존교사동교육환경개선사업 951,229천원
2	교육 환경 개선	세출목 변경	46,136	경북고 농구장우레탄포설 - 420 건설비	경북고 농구장우레탄포설 - 620 학교회계전출금
3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내역 수정	93,600	도림초 공영주차장 및 교사동방수공사	도림초 지하공영주차장천정 및 교사동방수공사
4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내역 수정	300,000	중원중 지하주차장설치	중원중 주차장설치